

제 9 편 위원회

위원회설치운영규정

한국어교육원 규정

제 1 조(목적) 본 규정은 **선학유과대학원대학교**의 학사 및 대학행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여 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적용범위)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정관, 학칙 및 기타 다른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 3 조(절차) ①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해당부처장이 위원회 규정을 입안하여 기획사무처에 규정제정을 요청한다.

② 기획사무처장은 위원회 설치 및 규정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규정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총장의 결재를 받아 해당 부처에 통보한다.

③ 해당 부처는 규정에 의거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내용을 기획사무처에 통보한다.

제 4 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약간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 및 위원은 해당부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
③ 위원회는 당해 위원회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가능하면 당연직위원의 범위를 축소하고 타 위원회의 위원과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.

제 5 조(위원의 임기) 각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현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에 의한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.

제 6 조(위원회 기능) 각 위원회의 기능은 당해 위원회의 설치목적에 합당하도록 정한다.

제 7 조(회의소집과 의결) ① 위원회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8 조(회의록)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.

제 9 조(시행)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총장의 결재를 얻은 후 시행한다.

제 10 조(사무처리) ① 위원회는 간사를 두어 사무를 처리케 한다.

② 간사는 해당 부처의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.

부 칙

①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 (경과규정) 이 규정 시행이전에 설치된 위원회는 이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.

등록금심의위원회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11조에 따라 등록금심의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본교의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한다.

제3조(구성) ① 총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원장을 포함 8인을 위원으로 위촉 하되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. 교직원(3인): 기획사무처장, 학생처장의 당연직 위원 2인과 총장이 추천한 본교 교직원 1인
2. 학생(3인): 원우회장, 원우회부회장, 당연직위원 2인과 원우회장이 추천한 본교학생 1인
3. 관련전문가(1인): 총장이 추천한 관련분야 전문가 1인
4. 동문(1인): 총장이 추천한 본교졸업 동문 1인

② 위원장은 기획사무처장으로 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③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간사를 둔다.

제4조(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 임기간으로 한다.

②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

제5조(회의의 소집과 의결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의 1/3이상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6조(회의록) 위원회는 회의의 일시, 장소, 발언 요지,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시행세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기금운용심의위원회

한국어교육원 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사립학교법 제32조의3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항을 심의 한다.

- ① 기금 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
- ② 기금 운용에 관한 지침의 제정 및 개정
- ③ 그 밖에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이 기금이 관리·운용과 관련하여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전문가가 1명 이상 되어야 한다.

②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.

③ 위원은 교원, 직원, 학생, 외부전문가,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제4조(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②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

제5조(회의의 소집과 의결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의 1/3이상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6조(회의록) 위원회는 회의의 일시, 장소, 발언 요지,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